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진 (외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외동포청 신설(2023.6.5.)에 따라 외무공무원 직위의 범위에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 직위를 추가하고,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임용권 일부를 위임하며, 재외동포청장에게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 및 승격 권한을 부여하고, 그밖의 인사운영상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실장급 이상 직위, 공사급 이상 직위, 참서관급 이상 직위에 재외동포청 직제에 따른 신설 외무공무원 직위 추가(안 제3조)
- 나. 유학휴직에 대한 재직경력 산정시 상한기간(최대 1년) 마련(안 제4조)
- 다. 재외동포청 소속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위임(안 제5조)
- 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안 제12조)
- 마. 14등급 직위를 역임한 퇴직 외무공무원의 외교부 복귀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바. 재외동포청 근무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외교부장관과 재외동포청장이 협의하여 설정 가능(안 제26조)

사.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 운영방식을 명확화(안 제33조, 제35조)

- 어학점수 미비로 인한 반복회부자 유예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
- 적격심사위원회의 조치 권고 및 재결정 등 세부기능을 명문화

아.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 퇴직공무원 위촉 요건을 실장급에서 공사급으로 완화(안 제4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5. 26. ~ 06. 0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3조제2항제5호 및”을 “(제3조제2항제2호다목·제3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 및 「재외동포청 직 제」(이하 “재외동포청직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차관보”를 “외교부 차관보”로, “경제외교조정관”을 “경제외교 조정관, 대변인, 기후변화대사, 공공외교대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외동포청 차장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외교원”을 “국립외교원, 재외동포 청”으로, “직위”란 외교부직제에 따른 직위 중”을 “직위”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항제1호, 제2호가목 및 나목, 제3호가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직위”란 제1항”을 “직위란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

항 중 “제59조제1항”을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 및 재외동포청 직제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2. 외교부직제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목의 직위

가. 국장,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외교기획단장, 국제안보대사,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및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

나. 부대변인, 감사관, 외교전략기획관, 의전기획관, 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 정보관리기획관, 장관정책보좌관, 심의관, 국립외교원의 기획부장, 경력교수 및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장

다. 협력관, 담당관,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3. 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목의 직위

가. 기획조정관, 재외동포정책국장 및 교류협력국장

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대변인, 담당관, 과장

다. 그 밖의 7등급 이상 직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간”을 “기간. 다만,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소속 참사관급 미만 직위 외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신규채용, 면직, 해임, 파면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재외동포청 소속 참사관급 이상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재외동포청

장의 추천을 받아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한다.

제7조제1항 중 “이상 직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를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 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20세”를 “18세”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퇴직한 경력직 외무공무원 채용의 예외) ①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외교부직제 제59조제1항에 따라 14등급에 지정된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 외무공무원으로서 퇴직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된 자가 그 임용에 따른 직위에서 근무하던 중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외교부로 복귀한 후 즉시 퇴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당 외무공무원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과 동시에 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당시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에 있어서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의3제2항에서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3조제2항제5호 및”을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제3호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참사관급”을 “참사관급”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제2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외동포청직제 규정에 의한 직위

제24조의2제2항 중 “제3조제2항제5호”를 “제3조제2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2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재외동포청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외교부장관과 재외동포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6조의4제1항 중 “외교부직제”를 “외교부직제 및 재외동포청직제”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9항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외교부”를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의한 외교부”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를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소속기관”을 각각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외교부직제 등의 개정”을 “외교부직제 및 재외동포청직제 등의 개정”으로, “외교부직제 등의 시행일”을 “외교부직제 및 재외동포청직제 등의 시행일”로 한다.

제33조제5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사대상자에 대한 적격 결정 이후 동일한 심사 회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심사대상 기간은 전단의 적격 결정을 받은 다음 날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제3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새로운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동 사유로 2회 이상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제34조의 제목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를 각각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실장급 이상”을 “제3조제2항제1호·제2호가목의”로, “3인”을 “7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를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을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을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

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로, “적격심사대상자”를 “심사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를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심사대상자의 능력회복 및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적격 여부를 재결정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 중 “자격심사위원회(이하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자격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를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로, “심사대상자의”를 “심사대상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로,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를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를 각각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가목 및 나목, 제3호가목”으로 하고, 같

은 조 제4항 중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를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각각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제1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및 재외동포청직제의 규정에 의한 직위”로 한다.

제42조 중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을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가목 및 나목, 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를 각각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실장급”을 “공사급”으로, “자”를 “사람(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45조의2의 제목 “(공로연수)”를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로연수”를 “연수”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 중 “재외공관근무·파견 및 휴직 중”을 “재외공관근무·재외동포청근무·파견 및 휴직 중”으로, “재외공관근무·파견 및 휴직 후”를 “재외공관근무·재외동포청근무·파견 및 휴직 후”로 하고, 같은 비고 제5호 중 “후”를 “후 외교부”로 하며, 같은 비고 제6호 중 “재외공관근무·파견”을 “재외공관근무·재외동포청근무·파견”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경력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경력평정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용 응시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연령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제1항의 “외교부장관은”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외교부장관이”를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로 한다.

②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참서관급 외교역량”이란 참서관급 직위(제3조제2항제5호 및 제3조제3항제4호·제5호의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위기상황관리 및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능력과 자질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생략) 제3조(직위의 범위) ①이 영에서 “실장급 이상 직위”라 함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부직제”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u>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u> 2. <u>차관보</u> , 의전장, 기획조정실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제3조제2항제2호 다목·제3호나목 및 다목, ----- ----- ----- ----- ----- ----- ----- -----. 4. (현행과 같음) 제3조(직위의 범위) ①----- ----- ----- ----- 한다) 및 「재외동포청 직제」(이하 “재외동포청직제”라 한다)----- -----. 1. <u>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u> 2. <u>외교부 차관보</u> -----

장, 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
조정관

<신 설>

②이 영에서 외교부 및 국립외
교원 등에 두는 직위 중 “참사
관급 이상 직위”란 외교부직제
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생 략)

2. 대변인, 기후변화대사, 공공
외교대사 및 국립외교원 외교
안보연구소장

----- 경제외교
조정관, 대변인, 기후변화대
사, 공공외교대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3. 재외동포청 차장

②----- 국립외
교원, 재외동포청 -----
----- 직위”란 -----

-----.

1. (현행과 같음)

2. 외교부직제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목의 직위

가. 국장,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외교기획단장, 국제안
보대사, 원자력·비확산외
교기획관 및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

나. 부대변인, 감사관, 외교전
략기획관, 의전기획관, 조
정기획관, 인사기획관, 정
보관리기획관, 장관정책보
좌관, 심의관, 국립외교원
의 기획부장, 경력교수 및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장

다. 협력관, 담당관, 과장 및

3. <u>국장,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외교기획단장, 국제안보대사,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및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u> 4. <u>부대변인, 감사관, 외교전략기획관, 의전기획관, 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 정보관리기획관, 장관정책보좌관, 심의관, 국립외교원의 기획부장, 경력교수 및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장</u> 5. <u>협력관, 담당관,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u> ③ (생략) ④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서관급 이상의 직위”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서관급 직위 이상”이란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직위를 말하며, 법 제2	<u>이에 상당하는 직위</u> 3. <u>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u> <u>중 다음 각 목의 직위</u> 가. <u>기획조정관, 재외동포정책국장 및 교류협력국장</u> 나. <u>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대변인, 담당관, 과장</u> 다. <u>그 밖의 7등급 이상 직위</u> <u><삭 제></u> <u><삭 제></u>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 직위”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제5항의 직위는 제외한다)를 말하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의 실장급 이상 직위”란 제1항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⑤ 법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위”란 외교부직제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 중 이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9등급(제3조제3항제3호에 상당하는 직위에 한정한다)에서 14등급까지로 정한 직위를 말한다.

제4조(재직경력의 산정기준) 이 영에서 “재직경력”이라 함은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제외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하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

--- 제2항제1호, 제2호가목 및 나목, 제3호가목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직위란 제1항 -----
-----.

⑤ -----

----- 제59조제1항 -----
각 호에 따른 직위 및 재외동포청 직제 제13조제1항 -----

-----.

제4조(재직경력의 산정기준)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그 휴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재직경력에 산입한다.

1. ~ 6. (생략)

제5조(임용권의 위임) (생략)

<신설>

<신설>

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

--- 기간. 다만,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1. ~ 6. (현행과 같음)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소속 참서관급 미만 직위 외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신규채용, 면직, 해임, 파면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재외동포청 소속 참서관급 이상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재외동포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

로 하고, 위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실장급 이상 직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
명하는 7명 이상의 외무공무원
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2외
무인사위원회(이하 “제2인사위
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
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3
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직위
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
관이 지명하는 7명 이상의 외무
공무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12조(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외무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
경쟁 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을 위한 공개경쟁 시험(이
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라 한다)의 응시연령은 20세 이
상으로 한다.

<신설>

----- 이상 -----

② -----

----- 제3
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 제3
호가목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8세 -----

제13조의2(퇴직한 경력직 외무공
무원 채용의 예외) ① 법 제2조

제18조(자격심사) ① 법 제13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서관급 이상의 직위”란 <u>제3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제4호·제5호의 직위를 말한다.</u> ② ~ ⑤ (생략)	<u>의2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외교부직제 제59조제1항에 따라 14등급에 지정된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 외무공무원으로서 퇴직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된 자가 그 임용에 따른 직위에서 근무하던 중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외교부로 복귀한 후 즉시 퇴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당 외무공무원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과 동시에 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당시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으로 채용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에 있어서는 「<u>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u>」 제16조의3제2항에서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자격심사) ① ----- ----- ----- <u>제3조제2항제2호다목, 제3호나목 및 다목, -----.</u> ② ~ ⑤ (현행과 같음)
--	---

⑥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참사관급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3회 받거나 고위외무공
무원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결
정을 3회 받은 사람은 최종 부
적격 결정을 통고받은 날부터 2
년이 지난 후에 자격심사에 재
응시할 수 있다.

⑦ (생략)

제21조(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
정) ①외교부장관은 제19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유관분야 근
무경력의 산정을 위하여 외교부
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정무,
경제통상, 영사 및 관리분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
니하는 직위)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모제를 적용
하지 아니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신설>

제24조의2(개방형직위의 운영) ①

⑥ 참사관급 -----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
정) ①-----

--- 소속기관, 재외동포청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
니하는 직위) -----

-----.

1. ~ 5. (현행과 같음)

6. 재외동포청직제 규정에 의한
직위

제24조의2(개방형직위의 운영) ①

(생략)

② 외교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5호의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26조(보직기간 등) ① ~ ⑤ (생략)

<신설>

제26조의4(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부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직무등급이 조정되어 정원이 초과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고위외무공무원을 참사관급 직위에 보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1조(인사평정)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의 평가요소는 근무실적 · 직무수행능력

(현행과 같음)

② ----- 제3조제2항제2호다목-----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보직기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재외동포청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외교부장관과 재외동포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6조의4(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① -----
----- 외교부직제 및 재외동포청직제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인사평정) ① -----

및 직무수행태도 등으로 구성하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서 단위의 운영 및 성과 평가 결과를 평가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실적은 직위별 또는 직무별 성과책임(직위별 또는 직무별로 기대되는 성과를 달성할 책임을 말한다) 및 이에 기초하여 정하는 연도별 업무목표의 달성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생략)

③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평정 단위연도에 대하여 인사평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평정 단위연도의 전후에 실시한 인사평정(그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에도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인사평정을 말한다)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인사평정으로 하되,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평정 단위연도 전에 2회 이상의 인사평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인사평정

 --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

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인사평정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 연도의 인사평정으로 본다.

④ ~ ⑧ (생략)

⑨ 평정자 및 평정대상공무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평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외교부장관이 정한 방식에 따라 평가에서 감점할 수 있다.

제32조(인사평정조정위원회)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의 결과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인사평정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자

2. 제3조제2항제2호·제3호의 직위에 재직중인 자로서 외교

-----.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

----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 청장-----
--.

제32조(인사평정조정위원회) ①-----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

②----- 의한 외교부 -----

-----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부장관이 지명하는 6인 이내
의 외무공무원

③ (생략)

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배정함에 있어 직무분석 실시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그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로 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③ (생략)

④ 외교부직제 등의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직제 등의 시행일 이전에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① ~ ④ (생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① -----
----- 소속기관, 재외동포청-----

-----.

② ----- 소속기관, 재외동포청-----

-----.

③ (현행과 같음)

④ 외교부직제 및 재외동포청직제 등의 개정-----
----- 외교부직제 및 재외동포청직제 등의 시행일 ---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① ~ ④ (현행

략)

⑤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적격심사의 구체적 심사대상기간은 신규채용일부터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⑥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심사 회부의 원인이 되었던 각 호의 사유는 심사종료일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새로운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신 설>

과 같음)

⑤ -----

--. <단서 삭제>

⑥ -----

-----, 심사대상자에 대한 적격 결정 이후 동일한 심사 회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심사대상 기간은 전단의 적격 결정을 받은 다음 날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⑦ 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

제34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
회의 구성 등) ①법 제24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적
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
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중
인 3인 이상의 외무공무원

2. 제3조제2항제2호 · 제3호의
직위에 재직중인 4인 이상의
외무공무원

3. (생략)

③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

까지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새로
운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취득
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동 사유로 2회 이상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 종
료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제34조(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
회의 구성 등) ①-----
----- 외무공무원 적
격심사위원회-----

-----.

②----- 외무공
무원 적격심사위원회-----
----- 각
호-----.

1. 제3조제2항제1호 · 제2호가목
의 -----
-- 7명 -----
<삭 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제1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①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격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신 설>

<신 설>

-----.

제35조(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①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 심사대상자-----.

②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

-----.

③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심사대상자의 능력회복 및 근무성적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

제36조(공관장 자격심사) ① (생략)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이하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심사대상자의 외국어능력·업무추진실적·도덕성·교섭능력·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격 여부를 결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자의 인사평정 결과에 최근 10년간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결정을 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임공관장에 대해서는 외국어능력·도덕성·교섭능력·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적격 여부를 재결정할 수 있다.

제36조(공관장 자격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자격심사위원회-----

--.

③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 심사대상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 받은 -----

-----.

④ -----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한다.

제37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관장자격심

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

원장은 외교부차관 중에서 외교

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

다.

③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

로 한다.

1. 재외공관의 장을 역임하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

지에서 정한 직위에 재직 중

인 외무공무원 5명

2. (생략)

④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재

적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심사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⑤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회

의는 반기마다 개최하고, 공관

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제37조(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관장 자격

심사위원회-----

-----.

②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

③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

1. -----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가목

및 나목, 제3호가목-----

2. (현행과 같음)

④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

⑤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회

의-----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2(당연퇴직 등) ① 삭제
②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직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외교부직제의 규정에 의한 직위(재외공관에 두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경우

2. ~ 4. (생략)

③·④ (생략)

제42조(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법 제28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조제3

-----.

⑥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

⑦ -----
-----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

제39조의2(당연퇴직 등)

②-----

-----.

1. -----

포함한다) 및 재외동포청직제의 규정에 의한 직위-----
--

2.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42조(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

-----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가목 및 나목, 제3호가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를 말하며,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제43조(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는 외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3명 이내의 외무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고 퇴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

목, -----

-----.

제43조(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

-----.

② -----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

-----.

1. 공사급 -----

----- 사람(퇴직일

2.·3. (생략) 제45조의2(<u>공로연수</u>)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공로연수</u> 중인 자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에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퇴직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u>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만 해당한다)</u> 2.·3.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u>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u>) ① (현행과 같음) ②----- <u>연수</u> ----- -----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외교부 인사기획관	
연 락 처	(02) 2100 - 7152